

2007. 9.

# 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①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
- 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  - 가.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  - 나. (주)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
  - 다.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

總務委員會

# 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①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(안)	2007.09.05	2007.09.05	2007.09.14	2007.09.14	기획감사과장
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(7차)안	2007.09.05	2007.09.05	2007.09.14	2007.09.14	회계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①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

#### 1)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제14조의2에 의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#### 2) 주요내용

##### ○ 연도별 인력 증·감 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비고
정원		1,317	1,327	1,332	1,338	1,343	
증	계	26	-	10	5	6	5
증	증	31	-	12	8	6	5
감	감	△5	-	△2	△3	-	

## 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### 1) 제안이유

2007년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 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 
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#### 가.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
##### □ 사업계획

- 사업기간 : 2007~2008
- 위 치 : 산척면 송강리 1253-1 외 9필지
- 부지면적 : 6,521m<sup>2</sup>
- 건축규모 : 1,024m<sup>2</sup>
- 사업비 증가내역
  - 당초 : 1,172,500천원
  - 변경 : 2,595,000천원(증 1,422,500천원)  
⇒ 부지매입비 370,500천원, 건축비 927,500천원

##### □ 변경사유

-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감정가액 상승
- 과소 책정된 건축비( $3.3\text{m}^2/2,492\text{천원}$ )를 현실에 맞게 조정  
⇒  $3.3\text{m}^2/5,483\text{천원}$

## **나. (주)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**

### **□ 교환대상 재산 개요**

구 분	공유재산(시유림)	(주)제피로스 재산	비고
위 치	양성면 사미리 산1외 5필지	충주시 금릉동 695	
면 적	410,636m <sup>2</sup>	2,038.6m <sup>2</sup>	
공시지가 재산가액	449,954천 원	1,645,150천 원	
감정평가액	2,222,253천 원	2,211,881천 원	
교환차액		10,372천 원 (제피로스 부담금)	

## **다.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**

### **□ 사업의 개요**

- 위 치 : 노은면 문성리 산 67-1
- 규 모 : 10동 1,166.03m<sup>2</sup>
- 사업기간 : 2007년
- 소요예산 : 15억 원(국1,050백만원 도225백만원 시225백만원)

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### **[1]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**

- 검토보고 없음

## 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### 가.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
- 본 건은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3억 7천만원, 건축비는 9억 2천 7백 5십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임.

토지매입비는 지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이며,  
건축비는 건축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고  
기타 설계용역 및 감리비, 부대비 등도 반영이 안 된  
사항이므로

사업비를 증액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 
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
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나. (주)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

- 본 건은 골프장 조성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림을  
(주)제피로스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상호 이득을 취하고자  
하는 사항임.

현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산악지형으로  
시에서는 자연 산림 조성 외의 타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 
지역이며,

(주)제피로스 소유의 토지는 상공회의소 옆의 업무용 토지로  
시의 입장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 할 수 있음.

-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는  
이미 대부분 (주)제피로스에서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 
골프장 조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

교환대상지가 용도 및 위치 상 활용도가 높고  
골프장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
여러 가지 면에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 
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사항임.

#### **다.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**

- 본 건은 문성리 산 67-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 
있어 휴양관 및 관리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 
사항임.
-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,  
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 추진 전에 승인받지 않고  
사업추진 중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 
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## 4. 질의. 답변 요지

### ①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

▶ 질의 : 없음

### 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▶ 질의 : 산척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건축 단가가 급격히 상승한 까닭은?

○ 답변 : 성내충인동 건축비를 참조하였던 것으로 추측됨.

▶ 질의 : 건축비 산출 근거는?

○ 답변 : 예산편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산출

## 5. 심사 결과

①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	: 보고청취
②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	: 수정의결
가.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	: 심사보류
나. (주)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	: 원안가결
다.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	: 원안가결

## 6. 붙임

○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 1부. 끝.